##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전현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999 발의연월일: 2024. 11. 28.

발 의 자:전현희·윤종군·추미애

김영환 · 문진석 · 이학영

박정현 • 황운하 • 홍기원

강준현 • 이훈기 • 황정아

정준호 · 남인순 의원

(149]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,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는 기간이 도래하거나, 합리적이지 아니한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신고에 대한 처리 지연 등으로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

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신고처리 지연을 방지하고,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

고자 함(안 제59조제9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제8항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59조(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	제59조(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		
등) ① ~ ⑧ (생 략)	등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		
<u> &lt;신 설&gt;</u>	⑨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		
	을 제8항의 기간 이내에 처리		
	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		
	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		
	<u>하여야 한다.</u>		
<u>⑨</u> (생 략)	<u>⑩</u> (현행 제9항과 같음)		